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23구합75608 (본소)사용승인 무효
2024구합66694 (중간확인의소)사용승인 무효
원 고 김중학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하대원동, 자이아파트)
피 고 1. 성남시장
2.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 201동 1202호
(도평리, 도평우림2단지아파트)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주 문

원고의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 유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을 신

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등 참조), 문서제출명령신청 내용에 비추어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5. 5. 25. 및 2025. 5. 26.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한 대상 문서들은 '사용승인(준공인가)의 근거가 된 재건축 사업 관련 문서 일체, 위 재건축 사업에 있어 원고 명의의 동의서, 위 재건축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관리처분계획안 사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원고 명의의 동의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청산을 이행한 내역 및 그 근거 문서, 원고가 조합원인 근거' 등인데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기존에 수십 차례 이상 재건축결의, 관리처분계획안승인 결의, 조합원 지위 등을 다투는 취지의 법률분쟁을 해왔고, 원고 패소의 관련 판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그 채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8.

재판장	판사	임 수 연	<u>전자서명완료</u>
	판사	양 해 인	<u>전자서명완료</u>
	판사	김 장 환	<u>전자서명완료</u>

등본입니다.

2025. 6. 2.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유신임



항고장

사 건 2023구합75608 사용승인 무효

항 고 인 김중학
(원고)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하대원동, 자이아파트) 114동 1202호

상 대 방 1. 성남시장
(피고)

2.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201동 1202호(도평리, 도평우림2단지아파트)
조합장 정휘만

3.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임병용

기각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원고의 2025. 5. 25.자 및 2025. 5. 26.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각 기각한다.

항고취지

수원지방법원이 2025. 5. 28.자 2025가합1235 사건에 관하여 내린 '2025. 5. 26.자 문서제출 명령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문서들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25.자 신청은 2025. 5. 26.자로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항고이유

1. 문서제출의 목적은 사위판결의 실체적 진실 규명
항고인은 종전 확정판결이 위조문서 및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위판결임을 밝히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출을 요청한 문서들은 모두 조합원 자격 유무, 금전청산

이행 여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등 이 사건 본안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규명할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이에 항고인은 증인 신청까지 자진 철회하며, 전적으로 문서 증거에 의한 사실 입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정한 바, “그 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2. 피고들에게 일방인 소송지휘

피고 성남시장이 허위사실을 변론함에도 조사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에 피고 중 2명이 불출석하고 문서제출 여부 등 심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장은 변론 종결 의사를 표시하고 선고기일을 예정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명백한 위반

그럼에도 재판부는 “기존 패소판결이 존재한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해당 문서의 제출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유일한 증거의 존재를 외면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거부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피고들과의 이해관계 내지 유착되었음이 명백합니다.

4.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유착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

이제 시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들과의 이해관계 내지 유착 관계를 자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인은 이 사안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관윤리위원회, 공수처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5. 6. 3.

항고인(원고) 김중학

○ 기본내용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루264	사건명	[전자]사용승인 무효
항고인	김중학	상대방	성남시장
재판부	제3행정부(나)(전화:031-639-1663)		
접수일	2025.06.11	종국결과	

○ 진행내용

진행구분 : 전체 ▼

-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추후 송달이 착오에 말미암은 것이거나 부적법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달결과는 ‘0시 도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 시 초일이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25.06.11	사건접수		
2025.06.24	항고인 김중학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5.06.25 도달	
2025.07.02	항고인 김중학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2025.07.06 도달	
2025.07.02	상대방 성남시장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2025.07.07 도달	
2025.07.02	상대방 성남시장에게 항고장부분 송달	2025.07.07 도달	
2025.07.14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25.07.31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제출		
2025.08.04	항고인 김중학에게 답변서부분(25.07.31.자) 송달	2025.08.04 도달	
2025.08.08	항고인(원고) 김중학 준비서면 제출		
2025.08.11	상대방 소송수행자 양지우,김동기,김경희에게 준비서면부분(25.08.08.자) 송달	2025.08.19 0시 도달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의(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